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. 6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5월 31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6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4. 6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유옥준)

가. 제안이유

❍ 법령의 제명에 따라 정비하고 독서실 폐관으로 인한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는 등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·정비하여 청소년독서실 운영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「청소년 기본법」의 제명 정비(안 제1조)

❍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제명 정비(안 제7조)

❍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제명 정비 (안 제9조)

❍ 독서실 폐관에 따른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 현행화(안 별표1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❍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라 정비하고, 청소년독서실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.

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(목적)에서는 상위법령인 「청소년기본법」의 제명이 「청소년 기본법」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함.
- 안 제7조제3호(사용료 감면)에서는 관계법령인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제명이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함.
- 안 제9조제6항(운영의 위탁 및 관리)에서는 관계법령인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의 제명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함.
- 안 별표1에서는 폐관된 청소년독서실을 삭제하고, 위치가 바뀐 곳을 현행화함.

❍ 검토 결과

- 이번 일부개정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현재 청소년독서실 운영 현황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 352 호

제출연월일: 2024. 6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청소년독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·정비하여 청소년독서실 운영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법령의 제명에 따라 정비하고 독서실 폐관으로 인한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법령, 조례명 인용 조문 수정(안 제1조, 제7조, 제9조)

1)「청소년 기본법」제18조로 변경

2)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

3)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로 변경

나. 독서실 폐관에 따른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 현행화(안 별표 1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청소년 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4. 4. 25.~5. 16./ 21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”를 “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”로 한다.

제7조제3호 중 “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9조제6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 1〕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(제3조 관련)

연 번	명 칭	위 치
1	구민회관 청소년독서실	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(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)
2	영등포본동 청소년독서실	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13길 8 (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-42)
3	도림동 청소년독서실	서울시 영등포구 도영로7길 10 (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222-7)
4	신길5동 청소년독서실	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264 (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22)
5	신길6동 청소년독서실	서울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193 (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741-37)
6	신길7동 청소년독서실	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0 (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897-3)
7	청소년문화의집 독서실	서울시 영등포로64길 15 (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07-2)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의 설치・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.
제7조(사용료 감면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단, 사용료 감면은 제5조제2항 중 별표 2의 입실요금은 전액 감면하고, 사물함 사용료는 정기권에 한해 1/3을 감면한다.	제7조(사용료 감면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 가정의청소년	3.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---------- ----------
4. ~ 9. (생 략)	4. ~ 9. (현행과 같음)
제9조(운영의 위탁 및 관리) ① ~ ⑤ (생 략)	제9조(운영의 위탁 및 관리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	⑥ ----------

위탁에 관한 사항은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의 규정을 적용하나, 제5항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또는 문화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한다.	----------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----------.